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이 성 욱¹⁾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참여권 개념보다 더 잘 실현하는 해석적 개념과 함께 해석에서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그 핵심 내용을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이론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의 일반적 자기결정권에 조응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둘째,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더 나은 해석은 협약 제12조 제1항을 참여권이 아닌 청문권으로 개념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셋째, 아동청문권 개념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아동견해 ‘듣기’, 권리로서의 ‘규범성’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경우 그들의 취약성과 의사소통 특성 및 급속한 발달적 변화로 인해 청문권 실현, 즉 성인의 ‘듣기’가 더욱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성인은 진심으로 귀기울여 영유아의 견해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견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듣는 것은 교사나 성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성인의 법적, 도덕적 의무임을 제시하였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 교사에게 있다. 이 연구는 성인의 ‘듣기’와 권리로서의 ‘규범성’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아동청문권, 자기결정권, 참여권, 영유아보육현장, 가치기반 해석이론

*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15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주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 ysh@snu.ac.kr)

I. 서론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은 유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과 다르다. 유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원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제공자의 입장, 즉 교사의 사정이나 보육현장의 여건만을 고려하는 것이 된다. 이는 유아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될 때 유아의 의사, 견해, 마음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유아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에 있어서 유아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도 이러한 판단을 공유한다. 협약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판단은 보편적이지 않다. 보육관련 행정가나 부모들과 유아교사들, 심지어 대부분의 보육관련 연구자들조차도 영유아에게 자신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모르며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유해미, 김은실, 황옥경, 김재원, 2011). 그래서 협약 이행감독 기관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보육현장 영유아에 대한 협약 제12조 제1항 적용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에게 협약 제12조 제1항의 권리가 갖는 의미는 아동·청소년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다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므로 보육현장이 권리실현에 중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0~5세 영유아 인구는 2013년말 기준으로 2백 80만명 정도인데 그중 2백20만명 정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닌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¹⁾을 통해, 협약 제12조 제1항을 협약의 다른 권리 조항들을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바탕이 되는 일반원칙²⁾

1) 일반논평은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있는 국제인권법이 아니나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2) 위원회는 일반논평5호 문단12에서 협약 전체의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2003). 뿐만 아니라 협약 제12조 제1항은 협약에서 주요한 원칙 조항인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제3조 제1항)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제2조)하고 ‘최대한의 발달’(제6조)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2009)고 하였다. 요컨대 협약 제12조 제1항은 협약의 일반원칙이기도 하면서, 나머지 세 개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영유아에게도 과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답으로서, 영유아들에게도 견해를 묻고 고려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2005; 12호, 2009). 영유아는 비록 언어가 미숙하더라도 비언어적인 몸짓, 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Lansdown, 2005).

‘영유아의 견해를 묻고 반영해야 한다’는 협약 제12조의 권리는 보육현장 연구에서 주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일반원칙으로서 다음의 4개 조항을 확인하였다. 제2조(비차별의 원칙), 제3조 제1항(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제6조(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제12조(아동견해의 존중 원칙)이다. 이 조항들은 자체가 하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다. 일반논평 5호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란 부제로, 협약의 조항 제4조, 제42조, 제44조 제6항에 대해 다루었다.

로 ‘참여권’으로 불려 왔다(Bae, 2009; Kanyal, 2014). 그런데 ‘참여권’은 보다 넓은 의미로 협약 제12조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등 아동의 시민적 자유권 조항들을 일부 또는 모두 묶어서 부르기도 한다(곽정인, 2014; 김윤나, 2011;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 2003; 서혜정, 서영숙, 김진숙, 2012;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2012; Quennerstedt, 2010). 또 ‘참여’는 ‘활동에 의무로서 개입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유해미 외, 2011; Hudson, 2012),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참여한다’(김윤나, 2011; 서문희 외, 2003; Thomas, 2007)는 용례로도 사용되어 다의적이고 상충되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도 ‘참여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하다(곽정인, 2014; 권혜진, 2014; 안소영, 2008; Hammarberg, 1990). ‘참여권’의 다의성과 모호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참여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Hudson, 2012). 그러므로 영유아보육현장에서 협약 제12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Dworkin(2015)의 해석이론의 해석 단계를 따라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한 후, 그 목적에 더 부합하는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동 조항을 재해석한 내용을 보육현장의 영유아에게 적용하고 논의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적 개념과 해석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협약 제12조 제1항의 재해석 내용을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적용하면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협약 제12조 제1항과 관련 실천(아동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거나 아동의 발화나 행동을 더 유도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협약 제12조와 관련 현장의 실천에 대해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주는 혼란과 불명료함을 해결하고자 협약 제12조 제1항과 관련 현장의 실천을 해석대상, 즉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을 위해 수집한 연구 자료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이해를 위한 해설과 연구 자료, 참여 관련 이론과 지표 연구, 참여권의 보육현장 적용 연구들이다. 수집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협약의 영유아기 실행에 대한 해설인 일반논평 7호, 협약 제12조에 대한 해설인 일반논평 12호를 기본자료로 하였다. 협약 제12조와 일반 인권과의 관련을 탐색하기 위해 헌법의 자기결정권 관련 논문들과 헌법학 교과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권(또는 ‘참여’)의 이론적 논의를 다룬 자료, 아동참여권 지표의 구성을 다룬 자료도 포함시켰다. ‘참여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지표는 아동청소년이나 일반 인권의 자료를 두루 포함하였다. 그 외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들(특히 협약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우선원칙에 대한 일반논평 14호와 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5호), ‘참여’ 관련 논문들과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와 UN 주요국의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의견, 기타 조사보고서,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그 외의 아동권리 및 일반 인권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영유아 또는 아동권리의 특수성 이전에 먼저 인권으로서의 일반성과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문권’의 영유아보육현장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의 참여를 다룬 연구 자료와 단행본을 수집하였다. 권리 또는 참여권을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연구한 국내외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주요 검색어는 ‘참여권’과 ‘보육’, ‘참여권’과 ‘유아교육’이었다. 청문권의 보육현장 적용을 위해 영유아 청문의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레지오에밀리아 접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2. 가치기반 해석

인간 존엄성,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 평등, 권리, 법 등과 같은 개념과 이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를 보인다. Dworkin(2015)은 이러한 현상이 ‘해석적 개념’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실천에서 얻어진 경험, 직관이나 상식, 종교·윤리·정치적 가치관, 미리 획득한 여러 가치들이 투

입되기 마련이며 이것들 없이는 개념들은 풀이되지 않는다(김도균, 2015.4.16). 동일한 해석 대상에 대하여 해석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며, 이 입장 차이는 경험적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규범적, 가치적 성격을 가진다(장영민, 2004).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은 연구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명시하는 해석이다. 규범에 대한 논의는 정당화의 부담을 수반하며 정당화는 가치에 대한 논변이 그 뼈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은 아동참여권과 같은 규범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드워킨에 의하면 정합성은 어떤 해석이 참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런 사고에 의하면 헌법과 같은 규범체계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규범체계에 대한 해석이 참이라는 것은 두 규범체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가 아니면 지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가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두 해석이 하나의 가치를 잘 실현해 낸다면 그 두 해석은 정합적인 것이다. 우리는 해석 안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구별함으로써 하나의 해석을 재구성할 수 있다(Dworkin, 2015, p. 223). 첫째는 해석이 속한 관행이나 전통을 준별하는 것, 둘째는 관행의 목적에 관한 일련의 가정들, 셋째는 특정 해석이 그런 목적적 가정들을 어떠한 대안보다도 더 잘 실현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드워킨 해석이론의 세 요소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와 분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해석이 속한 관행이나 전통을 준별하는 것으로 서론에서 제기된 이 연구의 문제 제기가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협약 제12조 및 관련 실천의 요구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 도대체 이런 권리조항과 실천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탐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협약 제12조 제1항, 즉 ‘아동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거나 아동의 발화나 행동을 더 유도하는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 즉 ‘협약 제12조’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절한 목적을 찾아낸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이 연구문제 1에 해당된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대상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의 단계이다. ‘제12조 제1항’의 존재 이유, 즉 존재의 목적에 비추어 그 관행의 요구를 재검토하고 보다 더 목적을 잘 실현하는 특정한 해석을 한다.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은 개념화로 나타난다. 개념이란 한정된 자원(보육현장의 경우 교사의 관심과 주의, 집중)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 가진 여러 측면 중 핵심적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견해나 감정을 더 반영하려는 노력’에 대해 ‘참여’라는 개념은 해석 대상의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다. 이 부분은 연구문제 2에 해당한다.

III. 결과 및 해석

‘참여권’으로 불리는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한 후, 그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재해석 결과를 제시하고 보육현장에 적용하였다.

1. 협약 제12조의 목적 탐색

아동권리협약은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이 실현할 인권의 목록을 제1부(제1조~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부의 권리 목록과 ‘일반 인권’(아동과 같은 특정 계층의 인권적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문서의 권리 목록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이 인권의 실현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즉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일반 인권 문서인 대한민국헌법을 택해 헌법상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하고자 할 때 헌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보완 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봄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인간존엄성(제10조 전문 전단), 자유권(제10조 전문 후단의 일반적 자유권, 제12조~제23조의 개별자유권), 일반적

평등권(제11조 1항 전문), 참정권(제24조~제25조), 청구권적 기본권(제26조~제30조), 사회적 기본권(제31조~제36조, 이 중 제34조 1항은 일반적 사회권)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각각과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각각을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겠지만 헌법의 이념 및 일반적 권리에 대응하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의 인간존엄성, 일반적 평등권, 일반적 사회권에 각각 대응하는 아동권리협약 조항은 협약에서 일반 원칙 조항들이다(아동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제1항), 차별 금지(제2조 제1항), 생존과 발달(제6조 제2항)이 그것이다. 이 대응의 성격은 일률적이지 않다. 일반적 평등권과 차별 금지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과 생존과 발달의 관계는 전자가 아동이라는 권리주체에 적용된 것이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인간존엄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엄성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인데 그러한 동등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이익의 관철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을 국가라는 제3자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의 일반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자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사상사에는 2백 여 가지의 자유가 나타나며 자신은 그 중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 논한다고 하였다(Berlin, 1969). 그는 소극적 자유에 대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헌법	인간존엄성		
	일반적 자유권	일반적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아동권리협약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제12조 제1항	차별금지	생존발달권

그림 1.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비교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는 적극적 자유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사람들 내부에 치유되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 지배하는 자기는 이성, 장기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 추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자기, ‘자율적인’ 자기이고, 치유되어야 할 어떤 것은 비합리적 충동, 즉각적 즐거움의 추구, 강렬하게 치솟는 온갖 욕구와 열정에 휩쓸리는 ‘경험적’인 또는 ‘타율적인’ 자기이다. 벌린은 자신의 일부가 열등하고 지배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자유라는 개념과 맞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 ‘자기의 주인임’이 자신의 일부가 열등하고 지배되어야 한다는 관념과 결부될 필연성은 없다. 대신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은 실질적 자유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자기의 주인임’이라는 내용이 결여된 자유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만으로 자기의 주인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 ‘자

기의 주인임’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음’이라는 개념의 배후에 있다. ‘자기의 주인임’은 자유의 목적이자 실체이다. 벌린의 말처럼 단지 ‘방해받지 않음’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서도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음’이라는 개념과 ‘자기의 주인임’ 즉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양자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³⁾ 이는 일반적(포괄적) 자유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추구권으로⁴⁾ 기본권화되어 있다.⁵⁾ ‘일반적 자유권’은 적극적인

3) 헌법재판소 2006.2.23. 2005헌마268.

4)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3.31. 2009헌마617);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6헌바35)

행위를 통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자유인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한수웅, 2015, p. 538).

일반적 자유권이라고 할 때 자유는 자기결정과 같은 말이다. 자유란 개인의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결정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기결정을 의미한다. 일반적 자유의 권리는 각자의 개성과 인생관에 따른 자유롭게 독자적인 인격발현의 권리이고 자기운명결정의 권리이다. 이는 일단,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⁵⁾ 사실 개인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자신의 자유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은 그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영역이 현저히 축소될 것이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는 심각한 실업사태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⁶⁾ 자유의 실현은 이처럼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자유의 실현은 무엇보다 국가의 부당한 침해 배제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전제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가 없다면 자유는 실현되는가? 성인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가 배제되었다고 해도 자유가 실현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동이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의사에 합치되는 유효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므로 아동의 경우 자기운명결정권은 ‘간섭의 부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어떤 보조적 원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원리는 이 통제력의 취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보완은 단속적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고 상시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보완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으로써 아동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자유권과의 관계에서 일반·특별관계에 있는 일반적 자유권이자, 다른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영역을 그 보호범위로 하는 보충적 자유권이다(한수웅, 2015, p. 537). 행복추구권이 헌법의 기본권체계에서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이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도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체계에서 유사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동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청문권’으로 명명됨)은 아동권

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6) 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마610.

7)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바50.

리협약의 다른 개별 청문권(제9조 제2항과 제4항, 제12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일반적 청문권이며, 다른 개별 청문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청문권이다. 인류 구성원의 권리로서 자유권이 실정권화된 역사가 길고 따라서 개별자유권의 실정권화가 발달한 것에 비해 아동 권리로서 청문권이 실정권화된 역사는 짧아 개별 청문권의 발달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이 더 빈번히 상기되는 것이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해석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으로 파악할 때 동 조항을 아동청문권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동 조항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의 부제, ‘아동청문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이 그 개념화의 완성이다.

아동청문권, 아동 견해 ‘듣기’의 강조

아동의 자기결정은 ‘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결정과정에서 청문되어질 권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식을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결정과정에서 청문되어질 권리는 ‘아동의 견해를 귀담아 듣고 고려해야만 하는’ 성인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성인의 아동 견해 ‘듣기’는 문자 그대로 ‘듣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12호)을 보면 제12조 제1항에 제시된 ‘듣기’원칙은 제12조 제2항에 제시된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의 ‘청문권’처럼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인이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하며 아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듣기’ 과정에 포함된다. 또한 표현된 아동의 견해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당하게 결정에 반영하며, 그 반영되어질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까지도 ‘듣기’과정의 요소이다. 이처럼 듣기는 단속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이다.

아동견해에 대한 성인의 ‘듣기’는 기본적으로 청구권이지만 ‘아동이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 요소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이 기본적으로는 청구권이지만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이나 희망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⁸⁾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주권의 원

8) 하나의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아동의 청문권리는 자세히 보면 호펠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권리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도균, 2002; 김현철, 2000, p. 65). 즉 아동청문권 안에 여러 권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리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국민이 투표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하고 있다(권영성, 2010, p. 134).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원칙이 되는 근거 중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수많은 국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체 국민이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국가사무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훈련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모든 국가사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신규하, 2014, pp. 27-28).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제도가 가미된 상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면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반 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참여권보다 청문권이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물론 청문권이 잘 실현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환경에서는 참여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더 고도로 실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처럼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서 ‘듣기’라는 것이 여전히 주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참여권이 강조된다면 그것은 참여 과정이 관련자들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줄 뿐 현실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에게 청문권이라는 해석이 유용한 기간은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취약성이 더 넓은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정주의(위계적) 문화가 강한 편이고(김정래, 1999), 시민적 자유도도 높지 않다(Freedom House, 2015). 온정주의 문화는 필요하면 상급자가 위에서 알아서 해주므로 수혜자는 그것에 감사해야지 성급하게 권리를 먼저 요구한다거나 제공된 것에 토를 달지 않아야 한다고 장려되는 문화이다. 온정주의 문화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성인이 추정하는 것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민적 자유도는 세계 50위 이하이다. 아동청문권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가 특히 낮았다. 정부는 매스컴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성소수자차별금지 논란으로 폐기되고, 여성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44%만을 받을 뿐이다(Freedom House, 2015). 시민적 권리의 이러한 취약성이 가장 약한 인간인 아동의 자기결정권 침해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문권, 권리로서의 ‘규범성’ 강조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서 아동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이 보장은 권리보장의무의 주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실현된다. 여기서 권리보장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의무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동청문권은 권리이며 인권이다. Dworkin (2004)은 권리를 으뜸패(trumps)에 비유하였다. 권리자는 권리에 의해 특정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회적 목표에 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권리로서의 규범력 외에 인권은 독자적 규범력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고 하였다. 인권은 권리보장의무의 주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실현된다. 인권은 처음에는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침해방어를 관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관념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인권은 일반적으로 보장의무의 주체가 국가인 권리로 정립되었다.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외교부, 2015).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이란 인권존

중(국가의 인권침해 금지), 인권보호(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인권침해 방지), 인권실현(국가에 의한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의미한다.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에게는 도덕적 혹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인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침해한 사인(私人)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향해 인권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권보장의무의 수취인이 국가이고 죄를 저지른 사인한테 인권침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인권과 행위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구성해 본다면 그 통설은 ‘국가는 입법·집행·사법 작용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게 하되 국가작용의 이 목표에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이익을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며, 각 사인은 도덕체계와 법체계에서 자신에게 직접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대목은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의 제3자와 관련된 목표는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에 한정되고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지우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3. 아동청문권의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성인의 ‘듣기’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청문권, 성인의 듣기는 더욱 중요하다. 우선 영유아의 성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영유아의 감정과 견해가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보육현장은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이 영유아가 관계된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곳이며, 모든 결정의 책임이 성인인 원장과 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교사나 성인들은 달리 의식하지 못한다면, 성인의 편견과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영유아가 관계된 일들을 결정하기 쉽다(최운지, 2009; Freeman, 2007).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청문권, 성인의 듣기가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의 형성 및 표현에서 비언어적 특성이 강하여 그 파악을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청문권에 관한 일반논평에서는 아동이 나이에 한 없이 견해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비록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이해, 선택, 선호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놀이, 몸짓, 표정, 낙서 및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청문권, 성인의 듣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영유아의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며 개별차가 크므로 ‘듣기’의 방법도 그에 조응하여 시기에 따라, 또는 영유아별로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에는 영유아의 놀이,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소통방법이 급속도로 변화 발달하며 언어발달 등 모든 발달

이 전생애 중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다. 급격한 발달에 더하여 개별 영유아는 발달 영역에 따라 개인내적으로 개인간에도 차이가 커서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만3세 유아의 자율배식 사례(서혜정, 구민정, 2013)에서 교사는 유아들의 연령에 맞게, 또한 개별 유아에 맞추어 ‘듣기’를 함으로써 유아의 자율성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개별 영유아가 원하는 소망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개별성에 대한 무시는 학대나 방임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아가 통상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졸리는 수준에서는 좀 참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며 적절하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빈번하게 참거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침을 못 먹고 간식 시간도 못 맞춘 유아는 점심 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수준에서 용인되기 어렵다. 이러한 비인도적 상황의 토대를 허물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청문권, 듣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듣고 반영하는 사례로 자율배식(서혜정, 구민정, 2013), 낮잠에서의 개별배려(권혜진, 2014), ‘영유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율배식의 부수적 효과로는 유아들의 경우, 이전보다 선호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시도가 많아졌고 먹는 양이 늘어났다. 교사의 경우, 아이들과 음식 등에 대해 대화하거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점심 시간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여유 있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교사의 보고가 있다. 자율배식을 통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되자 유아의 편식습관이 개선되고 소근육 발달 효과도 있었다고 하였다(유해미 외, 2011). 낮잠시간의 경우, 교사들이 낮잠 자기를 꺼려하는 영유아들을 억지로 재우지 않고 개별 영유아별로 그 날의 컨디션을 존중하고 이불을 펴주어 낮잠 대신 휴식을 취하도록 돕고 있는 사례(권혜진, 2014)를 보고한다.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보육기관을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에 처음 다니게 되어 불안하고 불편한 영유아의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개인차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또한 개별 영유아가 기관에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과정이 포함된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과정의 부제인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나정, 임미령, 박창현, 2011)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핵심이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과정은 ‘듣기’의 구체적 방법으로 ‘기록’을 한다(Fraser & Gestwicky, 2003). 그들의 기록은 영유아의 활동에 대한 엄청나고 특유한 기록이다. 교육적 기록 작업이란 녹화자료, 사진, 유아 대화 녹음 자료, 유아 작업 기록 자료, 유아 작업 관찰 자료 등의 교수법 실천에서부터, 구성물이나 그림으로 유아가 표현

한 것들까지 모두 망라된다(레지오 에밀리아 공식 홈페이지, 2015; Fraser & Gestwicky, 2003). 교육적 관점에서 기록이란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가시화하려는 회고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미래의 학습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것이다(Hocevar, Sebart, & Stefanc, 2013; Taguchi, 2011, p. 392). 교사는 기록작업을 통해 아동의 견해를 객관화함으로써 영유아의 견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영유아의 견해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록은 영유아의 자존감을 높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촉진할 수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어린이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지 간에, 자신들이 야외 학습에서 대충 스케치한 그림이 집단으로 벽화 그리기, 조각하기, 그림그리기 등과 같은 다음의 작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일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자료: Katz(1997)의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p. 59.

영유아의 언어 등 다양한 표현은 기록물이 되어 보존되고 교사에 의해 ‘읽히고 또 읽힌다’ 영유아의 표현물에 대한 이런 존중이 교육이 아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프

로젝트 접근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기록 작업은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해석하여 다음 단계의 기초가 확실히 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해석하는 것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듣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단계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유아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순환으로 이어진다.

영유아보육현장에서 권리의 '규범성'

앞서 권리로서의 청문권의 규범성 논의를 전제로 아동청문권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기관의 의무를 논할 수 있다. 보육기관의 활동을 국가작용의 일부로 볼 때 보육기관은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대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는 헌법 규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는 헌법 규정에 의해 아동청문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기관의 활동이 국가작용의 일부라면 보육기관은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육기관이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를 지기 위해서 보육기관의 활동을 국가작용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문권은 청구권적 권리이므로 아동청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의무의 수취자가 아동청문권을 침해하지 않

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적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의무는 사인이 부담하지 않고 사법부나 행정부 같은 국가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육기관의 활동을 국가작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공립 기관의 행위는 국가권력인 행정권의 구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정종섭, 2015, p. 340)이므로 국공립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법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행위의 주체는 사인이지만 그 행위의 실질이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정종섭, 2015, p. 339). 민간 기관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강력한 규율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의 예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책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도 인가사항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강제사항이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령 및 행정청지도·감독 등의 방법으로 행정권의 기속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국가의 공적 지원이 민간 기관에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은 국공립기관 외의 기관도 그 행위의 실질이 행정행위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행위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예상된다.

아동청문권 실현의 법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정기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논평에서 “아

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 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 및 교육 체계에서의 징계과정을 포함한 행정기구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 청문권이 촉진 되도록, 입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자신의 견해가 고려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청문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부모, 교육자, 정부의 행정직 공무원, 법관, 그리고 전체 사회에 교육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참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논평 제12호 문단67은 아동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절차의 예로 학교에서의 징계(정학이나 퇴학), 졸업자격부여 거부와 성적 처리, 소년원에서의 규율과 권리 불인정,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망명, 운전면허 신청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예는 영유아보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동청문권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연구자는 법은 다른 형태의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입법에서 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에서, 이념이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권이 규정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조치는 행정에서의 변화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나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보육기관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1월 전문개정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하여(강현구, 2014; 김영명, 2005; 이순형 외, 2013), 보육이념 조항이 신설되고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최선의 이익 우선원칙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명시되었다. 아동청문권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만나는 성인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면 추가적인 보육이념으로 명시될 수도 있지만 노르웨이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보육과정이나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Bae, 2010; Stern, 2006, p. 44). 노르웨이 교육연구부는 아동의 참여권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매일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견해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다.

섹션3. 아동의 참여권⁹⁾

- 유치원 아동은 매일의 활동 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유치원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규칙적으로 가진다.
-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에 따라 타당한 가치부여를 받을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는 당사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현장에서의 의무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이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에서도 영유아보육현장에서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유아기관

9)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2006: Bae, 2010에서 재인용

리지표 매뉴얼'(Vaghri et. al., 2010, pp. 82-93)¹⁰⁾에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역시 매일의 교육과 활동에 적용할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실현할 의무자로 국공립 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관도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의사결정에서의 유아참여를 실현할 의무보유자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로 건강, 교육, 사회복지부분이 있다. 둘째, 부모, 기타 양육자,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다. 셋째, 시민사회와 부모 및 양육자와 영아를 위한 민간영역 서비스 공급자가 있다. 넷째, 양육자와 기타 전문가를 훈련하는 학교와 대학이 있다. 국공립기관은 국가 및 지방정부 관련부서로 교육, 사회복지부분에 해당되며, 민간기관의 경우 민간영역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되므로 의무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법에 반영되고 명시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의무자들의 실행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명시된 원칙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구체화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Bae, 2010).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아동최선의 이익'과 '비차별'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보육 현장의 일상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

동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을 마주하는 성인에게 개인의 도덕적 의무로서 아동청문권 실현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보육기관의 아동청문권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의 유무는 법과 도덕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한 사회 혹은 인류공동체가 영유아의 보육현장 청문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교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강력한 '권리' 규범으로서 성인에게 법적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청문은 교사나 성인이 선의로 해주거나 교수기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와 성인의 의무이다. 영유아는 자기결정을 위해 성인에게 청문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성인은 적극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놀이의 장소와 놀이의 종류, 놀이의 방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고통(김경희, 안소영, 한지숙, 2013)은 성인이 저야 할 의무의 위반이다. 놀이에서 영유아가 원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고려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최소보호기준 10가지를 모두 충족하고(나정, 2010),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스웨덴(OECD, 2013)의 유아교사의 생각이 그렇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참여권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영유아 입장에서는 영유아 자신들의 활동과 무슨 놀이를 할 지를 결정하는 것

10) Vaghri 등은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A guide for state parties reporting to the CRC'란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책자의 저자로서 유아권리지표그룹의 구성원이다.

만 허용될 뿐이며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교사가 결정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Sandberg & Eriksson, 2010). 그러므로 적어도 놀이만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유아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성인은 그것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을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며 유아가 원하는 바를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동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 탐색을 통해 동 조항의 실현에 부합하는 더 나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핵심 내용을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그 개념화가 청문권이다.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협약 제12조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해석적 개념이다. 아동청문권 개념은 성인의 ‘듣기’역할, 권리로서의 ‘규범성’이 중요하다.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 권리이며 특히 온정주의 문화가 강하고 시민적 자유도가 낮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적합한 개념이다. 청문권은 ‘권리’이며 권리는 으뜸패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문권은 또한 ‘인권’이며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의 핵심내용을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면 교사와 성인은 진심으로 귀기울여 영유아의 견해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영유아의 견해를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 레지오 에밀리아의 ‘기록’이 필요하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 교사에게 있다.

성인의 ‘듣기’와 권리로서의 ‘규범성’에 대한 강조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과 제도 전반을 보육현장이 영유아 개인의 견해와 감정을 중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제도는 저출산 해결, 어머니의 노동지원, 부모의 일·가정양립, 미래인적자원 조기투자 등의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목적들에 치중하다 보면 영유아의 현재 삶의 중요성, 현재의 견해와 감정 반영의 중요성은 간과되거나 무시되기 쉬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의 현재의 견해와 감정 반영을 제고하기 위해 누리과정 실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 현장에서 거의 조정없이 그대로 충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현행 관점에서는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들어야 하는 청문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처럼 발생적 과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누리과정이 보육현장에서의 발생적 과정과 상호적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정선아, 2014).

셋째,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듣고 반영하려면, 영유아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므로 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

적 역량 마련을 위해 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 급여인상 외에 근무시간 단축과 연구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사정, 관찰 및 기록을 할 역량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직접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 해석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함께 제공받아야 한다.

이 연구는 아동권리 연구에서 ‘아동청문권’의 개념적 중요성과 의의, 핵심적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이후 아동권리 연구, 특히 참여권 관련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아동청문권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가치있는 개념임을 논증하였고, 성인의 듣기 역할과 성인에게 청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주어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 아동권리인 ‘청문권’ 해석 내용을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적용할 때 영유아의 견해 특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의의가 있다. 아동 일반에 대한 청문권 규범이 영유아기라는 인간발달 시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의식을 통해 영유아기의 견해와 감정의 비언어적 특성을 비롯하여 높은 의존성, 급격한 발달과 변화, 개인차 등의 특성에 주의를 환기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아동이 원하는 것을 듣고 반영하는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의 재해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육현장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을 통해 현행 실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청문권의 실행 실태를 조사하여 ‘청문권’ 개념화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혹은 직접 실행실태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선행한 참여 관련 보육현장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문권으로 재해석한 결과를 적용해 본다면 영유아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문권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영유아의 청문권은 영유아의 삶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정에서의 적용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구 (2014).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및 법령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정인 (2014). 참여권을 존중한 유아의 실의 놀이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467-494.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서울: 한학문화.
- 권영성 (2010).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 권혜진 (2014). 낮잠시간 영유아 참여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수준.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3(2), 5-30.
- 김경희, 안소영, 한지숙 (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 경험에 대한 아동의 인식 연구. 아동과 권리, 17(2), 175-204.
- 김도균 (2002).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I). 서울대학교 법학, 43(4), 171-228.
- 김도균 (2015.4.16.). ‘고슴도치’처럼 우직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87270.html>에

- 서 2015년 7월 10일 인출.
- 김영명 (2005). 영유아보육법령 개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아동과 권리, 9(2), 225-247.
- 김윤나 (201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발전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4(3), 1-21.
- 김정래 (1999).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 아동과 권리, 3(1), 21-39.
- 김현철 (2000). 權利에 대한 法哲學的 研究: 權利概念의 再構成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 정 (2010).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 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14(3), 101-122.
- 나 정, 임미령, 박창현 (2011). OECD가 선정한 5가지 유아교육과정. 교양: 공동체.
- 레지오 에밀리아 공식 홈페이지 (2015). <http://zerosei.comune.re.it/index.htm> 에서 2015년 7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 (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서혜정, 구민정 (2013). 만 3세 아이들의 자율 배식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아동과 권리, 17(4), 643-672.
- 서혜정, 서영숙, 김진숙 (2012). 유아에게 참여 기회를 주려는 교사의 노력과 그 경험의 의미. 幼兒教育研究, 32(6), 111-137.
- 신규하 (2014).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소영 (2008). 소집단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는 개별 유아의 참여과정과 교사의 지원. 아동과 권리, 12(4), 643-672.
- 외교부 (2015).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http://www.mofa.go.kr/trade/humanrights/foreignrights/index.jsp?mofat=001&menu=m>에서 2015년 7월 1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일반논평 5호.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5%2fRev.1&Lang=en에서 2015년 5월 2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일반논평 7호.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7%2fRev.1&Lang=en에서 2015년 5월 2일 인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9). 일반논평 12호.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12&Lang=en에서 2015년 5월 2일인출.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순형, 이혜승, 이성옥, 황혜신, 이완정, 이소은, . . . 성미영 (2013).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2012).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민 (2004). 드워킨의 법철학 사상. 法學論集, 9(1), 285-310.
- 정선아 (2014).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

- 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47-164.
- 정종섭 (2015).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 최윤지 (2009). 보육교사의 유아의견 존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웅 (2015). 헌법학 제5판. 과주: 법문사.
- Bae, B. (2009).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 challenges in everyday interaction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7(3), 391-406.
- Bae, B. (2010). Realizing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settings: Some critical issues in a Norwegian context. *Early Years*, 30(3), 205-218.
- Berlin, I. (1969).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 (2004). 법의 제국. 장영민(역). 서울: 아카넷. (원본 발간일, 1986)
- Dworkin, R. (2015). 로널드 드워킨 정의론. 박경신(역). 서울: 민음사. (원본 발간일, 2011)
- Fraser, S., & Gestwicki, C. (2003). 진정한 유아기 레지오 에밀리아의 현장 적용. 김은희, 고문숙, 정정희(역). 서울: 정민사. (원본발간일, 2002)
- Freedom House (2015). *Freedom in the world 2015*. Retrieved from 10, May, 2015, <https://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4>.
- Freeman, M. (2007). Why it remains important to take children's rights seriously.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1), 5-23.
- Hammarberg, T. (1990).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how to make it work. *Human Rights Quarterly*, 12, 97-105.
- Hocevar, A., Sebart, M. K., & Stefanc, D. (2013). Curriculum planning and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in the Reggio Emilia pedagogical approach.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1(4), 476-488.
- Hudson, K. (2012). Practitioners' views on involving young children in decision making: Challenges for the children's rights agenda.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2), 4-9.
- Kanyal, M. (2014). Childhood and children's participation: A social - cultural perspective. In M. Kanyal (Ed.), *Children's rights 0-8: Promot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care*. (pp. 51-73). New York: Routledge.
- Katz, L. G. (1997).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김희진, 오문자 역.) In C. Edwards, G. Gandini, & L. Forman (Eds.),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pp. 49-73). 서울: 정민사. (원본 발간일, 1993)
- Lansdown G. (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Innocenti Research Centre, UNICEF/Save the Children, Florence.
- OECD (2013).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weden 2013*. OECD Publishing.
- Quennerstedt, A. (2010). Children, but not really human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hampering effect of the "3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8(4), 619-635.
- Sandberg, A., & Eriksson, A. (2010).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eschool - on the conditions

- of the adults? Preschool staff's concept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eschool everyday lif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5), 619-631.
 - Stern, R. (2006). *The child's right to participation - Reality or rhetoric?* (Doctoral dissertation). Uppsala University.
 - Taguchi, H. L. (2011). 유아교육에 대한 재개념화: 당연시하던 생각에 도전하기 (한유미, 권정윤, 신미자 역.) In E. Johanna, & J. T. Wagner (Eds.), 북유럽의 아동기와 유아교육: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철학·연구·정책·실제 (pp. 385-432). 고양: 한권. (원본 발간일, 2006)
 - Thomas, N. (2007). Towards a theory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2), 199-218.
 - Vaghri, Z., Arkadas, A., Hertzman, C., Krappmann, L., Gertsch L., Cabral., M., . . . Kikuchi-White, A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A guide for state parties reporting to the CRC*.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Group. Unicef.
- 1 차원고접수 : 2015. 07. 12.
수정원고접수 : 2015.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9. 01.

Reinterpretation of the Child's Right to Participate and Application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Lee, Seong-Ok

Yi, Soon-Hy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2, Clause 1, so-called the right to participat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im of this provision and to suggest an interpretative concept that could realize the aim better tha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o propos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pretation. For this study, Dworkin's value-based interpretation theory was us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 corresponded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 so the aim of the provision was to realize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child.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interpret to conceptualize Article 12, Clause 1 as the right to be heard, no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rder to realize the childr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rd, adults' hearing of the view of the child and normatism as right as core contents of the concept were emphasized. These findings show that teachers or other adults should take the view of the child seriousl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policy proposal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value-based interpretation theory